

< 근로장려금 •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>

□ 근로 • 자녀장려금 제도란 ?

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.

신청자격과 신청기간, 방법을 확인하여 근로 •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자격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사람.
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.

근로장려금

부부합산 총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
	단독가구	2,000만원 미만	3~150만원
	출벌이가구	3,000만원 미만	3~260만원
	맞벌이가구	3,600만원 미만	3~300만원
1)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) 맞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			
재산요건	2018.06.01.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		

자녀장려금

가구	2018.12.31.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		
부부합산 총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(자녀 1인당)
	출벌이가구	4,000만원 미만	50~70만원
	맞벌이가구		
재산요건	2018.06.01.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		

○ 공통사항

- 18세 미만 부양자녀 : 2000. 1. 2. 이후 출생 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- 70세 이상 부양부모 : 1948. 12. 31. 이전 출생 부 또는 모
-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

*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「모의계산」(화면우측 상단)에서 가능

- 신청기간 : 2019.05.01 ~ 2019.05.31.

- 신청방법 : ARS(☎ 1544-9944),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 앱), 서면신청(세무서 방문)
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.

※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☎ 126번 ②번 -> ④번 누른 뒤 상담원과 통화